

사고보증금유보 계약서

본 사고보증금유보 계약서(“본 계약”)는 _____, ____, ____.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:

1. **주식회사**
2. **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**

전 문

주식회사(이하 “차주”)는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(이하 “대주”)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거래약정(이하 추가약정서를 포함하여 “본건 대부거래약정”)을 체결하고자 한다. 차주는 대주에 대한 본건 대부거래약정상 채무 원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고보증금을 대주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자 한다.

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 【정의】

- ① “보증금유보 계좌”라 함은 하나은행에 대주 명의(계좌번호: 2 4로 개설된 보통예금 계좌를 말한다.
- ② “사고”라 함은 본건 대부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을 포함하여 대주가 본건 대부거래약정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.
- ③ 본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는,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, 본건 대부거래약정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.

제2조 【사고보증금 예치】

차주는 본건 대부거래약정 체결일에 본건 대부거래약정상 채무 원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고 대비 보증금으로 금 삼천만원(30,000,000)(이하 “사고보증금”)을 보증금유보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. 명확히 하자면, 차주는 개별 대출건별로 사

고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대출취급시 1회에 한해 사보보증금을 보증금유보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하며, 본건 대부거래약정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3조 【보증금유보 계좌 관리】

- ① 대주는 본 계약 제2조에 따라 보증금유보 계좌에 예치된 사고보증금을 사고 발생시까지 보증금유보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대주는 차주에게 서면 통지 후 예치금을 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차주가 지급한 사고보증금은 대주와의 유동화 거래가 끝나는 시점까지 대주가 보관하기로 한다.

제4조 【본 계약의 효력】

본 계약 제3조에 따라 보증금유보 계좌에 예치된 예치금이 전액 이체 또는 인출된 경우 본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제5조 【양도】

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다.

제6조 【준거법 및 관할】

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되며,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로 한다.

(다음 기명날인(서명)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)



본 합의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이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차주 :

· 주식회사

대표이사 :

대주 :

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, 4층(여의도동, 금투센터)

대표이사 김 학 형

(인)